등록방법 & 등록관련 FAQ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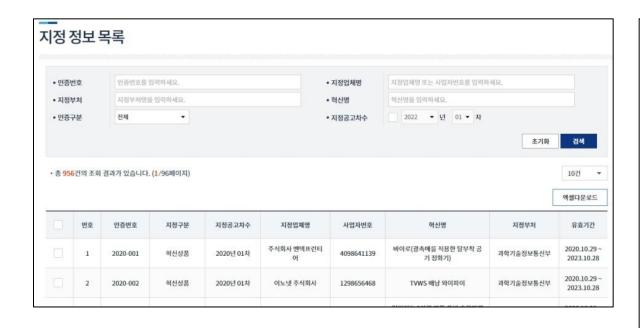
혁신장터 상품등록 안내 신규업체용

혁신장터 제품 등록 전 지정현황 확인[1/2]





혁신장터 제품 등록 전 지정현황 확인[2/2]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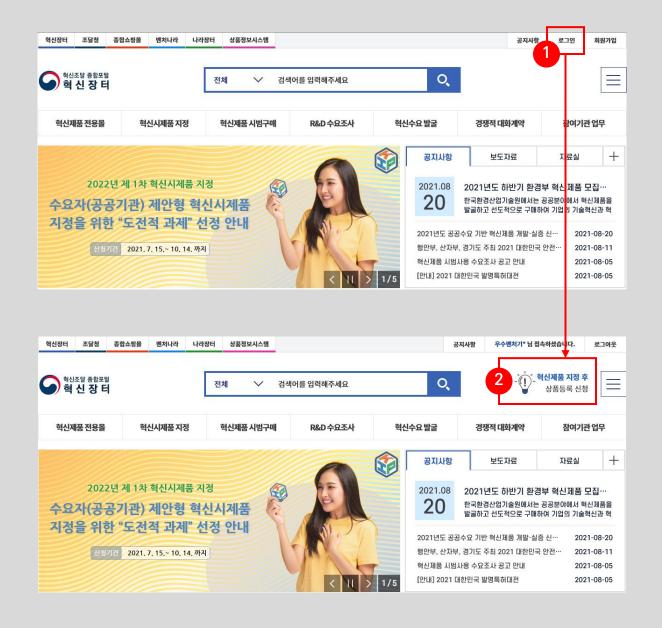
- ① 지정정보 상세내역, 최종 승인 규격서 등을 확인(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 시 자사 규격서만 다운로드 가능)
 - ※ 지정정보에 입력되지 않은 제품은 혁신장터 제품 등록 불가
- ② 혁신제품 지정정보 / 규격서 관련 문의 : 한국조달연구원 / 02-796-8234
 - FT1: 최영훈 연구원(내선번호 541) / FT2: 김소희 연구원(내선번호 547) / FT3: 안유진 연구원(내선번호 542)

혁신장터 혁신제품 전용몰 <u>제품 등록 단계</u>

01 03 04 02 05 혁신장터 로그인 이용약관 및 업체정보 등록 진행현황확인 제품정보 등록 사전절차 동의 및 수정 (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) (담당자 및 업체 소개 등) (지정받은 식별번호로만 등록) (최초 1회만 진행) (관리자 반려 시 반려내용 확인 후 수정하여 다시 제출)

CHECK!

- ① 제품 등록 제출 시 관리자가 해당 내용 확인 후 승인처리
- ② 관리자가 승인처리 해야 혁신장터 내 상품 노출 가능
- ③ 수정 시 반려처리 선행 후 진행되며, 재승인 시 까지 혁신장터 내 상품 노출 불가
- ④ 현재 임시저장 기능이 없으므로 상품 등록 시 모든 내용 작성하여 제출 필수



1.1 혁신장터 로그인

혁신장터 접속 (http://ppi.g2b.go.kr)

- ① 로그인
-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시 사용한 인증서
- ② 혁신제품 상품등록 신청(배너) 클릭
- 상품등록 신청 배너는 로그인해야지만 보임



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

■ 제1장 총칙

제1조[목적]

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·관리하는 "혁신장터"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 이 있습니다.

/ 제2조[용어의 정의]

-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1. "혁신제품 전용물"이란 "혁신장터" 내(內)의 혁신제품 전용 온라인 제품물을 말합니다.
- 2. "수요공급 커뮤니티"란 "혁신장터" 내(內) 혁신수요 및 공급 정보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말합니다.
- 3. "이용기관"이란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이하 "나라장 터"라 한다.)에 등록한 기관 중 「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」(이하 "이용약관"이라 한다.)에 동의하고 혁신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
- 4. "이용업체"란 「조달청 혁신장터 운영·관리 규정」 ("이하 혁신장터 운영관리 규정"이라 합니다.)에 따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혁신장터를 이용하는 조달업체를 말합니다.
- 5. "이용자"란 수요공급 커뮤니티의 수요제기 또는 의견등록 기능을 통해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조회하는 기업, 단체, 공공기관을 말합니다.
- 6. "혁신장터 관리자"란 혁신장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(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.)을 말합니다. 관리자는 우수사례 발굴 및 불건 전사례 신고, 의견의 정리 등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
- 7. "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"이란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?운용하는 정보시스템(이하 "나라장터"라 합니다.)을 말합니다.

혁신제품 전용물 이용약관동의

취소

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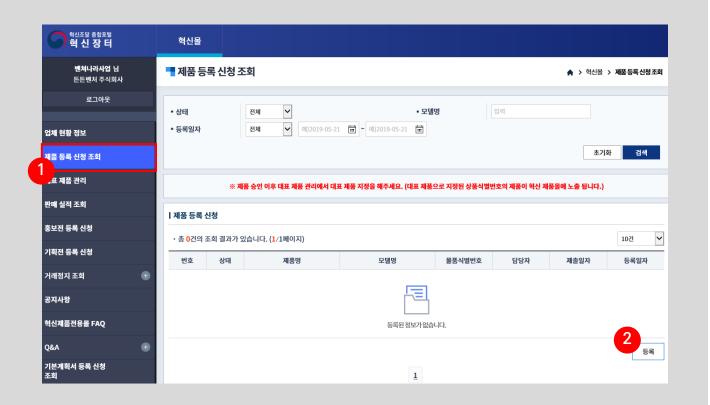
2

1.2.1 이용약관 동의 (전)

① 이용약관 동의 체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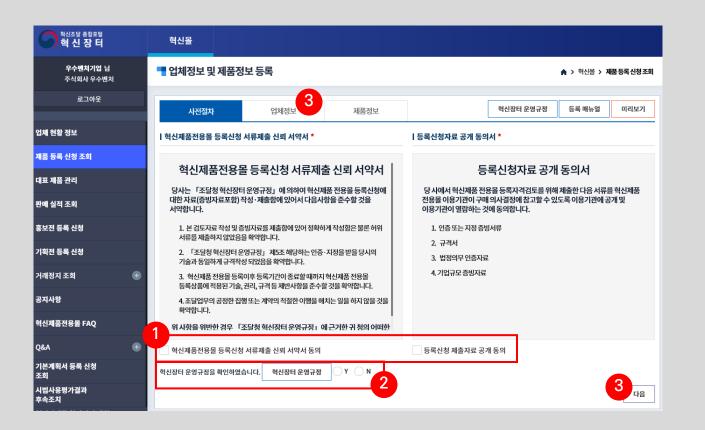
- 혁신장터는 별도 회원 가입 절차 없으나 최초 방문 시 이용약관 동의 필수
- 이전에 혁신장터에 로그인해 동의한 이력이 있으면 이용약관 단계가 없음 (다음 단계로 진행)

② 확인 버튼 클릭



1.2.2 이용약관 동의 (후)

- ① 제품등록신청조회 메뉴
- ② 신규 등록은 등록버튼 클릭
- 이용약관 동의를 완료한 경우,재방문 시 해당 동의 절차 없으므로 제품등록신청 조회 페이지 우측 하단의 등록 버튼 클릭해 등록
- 이전 등록상품의 수정은 상품등록 관리자에 요청 후 해당
 제품명 클릭하여 상세 페이지에서 수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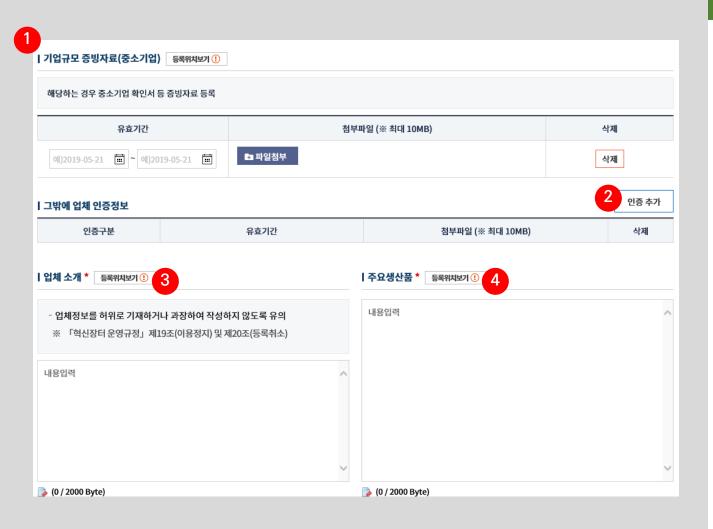
1.3 사전절차 동의

- ① 신뢰서약서 및 등록신청 제출자료 공개 동의
- ② 혁신장터 운영규정 내용 확인 후 체크
- 해당 동의는 혁신제품전용몰 등록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에 해당하므로 동의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
- ③ 다음 또는 업체정보 클릭해 이동

별표(*)로 표기된 부분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. l 업체 일반정보 등록위치보기 (!) 사업자등록번호 9992111199 대표자명 나벤처 업체명(국문) 주식회사 우수벤처 업체명(영문) test 37 주소 (35200)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6-0 (만년동) 전화번호 042-365-0596 팩스번호 042-365-0596 홈페이지 test.test. 제조업체 담당자 명 * 홍길동 입력 - 입력 - 입력 업체구분 담당자 연락처 * ✓ 공급업체 담당자 이메일 * 입력 SMS수신여부동의 * ✓ 수신 □ 미수신 | 업체 인증정보 3 본 업체 인증정보는 나라장터와 연동하여 제공하는 정보임 업체정보 유효기간 업체 인증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
2.1 업체정보 입력

- ① 업체일반정보 확인 및 작성
-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정보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변경 원할 시 나라장터 통해 변경
- ② 사업담당자 정보 입력
- ※ 입력한 담당자 연락처로 혁신장터 제품 등록 등 업무관련 SMS 발송, 미수신 체크 시 발송 안 됨
- ③ 인증정보 내용 확인
- 나라장터 정보와 연계 제공



2.2 업체정보 입력

① 기업규모 증빙자료 작성

- 유효기간입력
-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첨부

② 그밖에 업체 인증정보 작성

- 해당 인증: 장애인 기업, 사회적 기업, 새싹 기업, 창업 기업, 벤처 기업

③ 업체 소개글 입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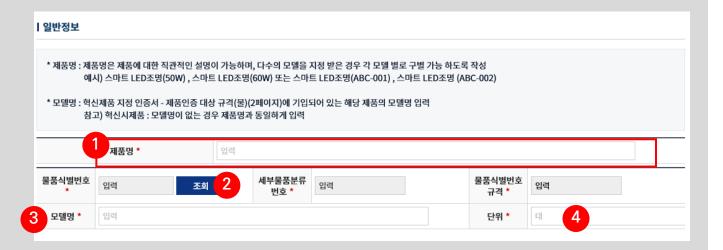
 업체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

④ 주요 생산품에 대해 입력



2.3 업체정보 입력

- ① 업체 홍보 이미지 첨부
- ※ 최소사이즈: 가로400px, 세로300px (가로 최대 950px까지 가능)
- 이미지 용량/개수: 파일 당 최대 10MB/최대 5개
- ② 업체의 유튜브 홍보 동영상 주소 입력
- ③ 키워드 추가
- ④ 다음 버튼 클릭 또는 제품정보 탭 클릭



3.1 제품정보 입력

① 제품에 대해 직관적으로 작성

- 예: 스마트 1 LED조명 SLE312-345F

② 식별번호 조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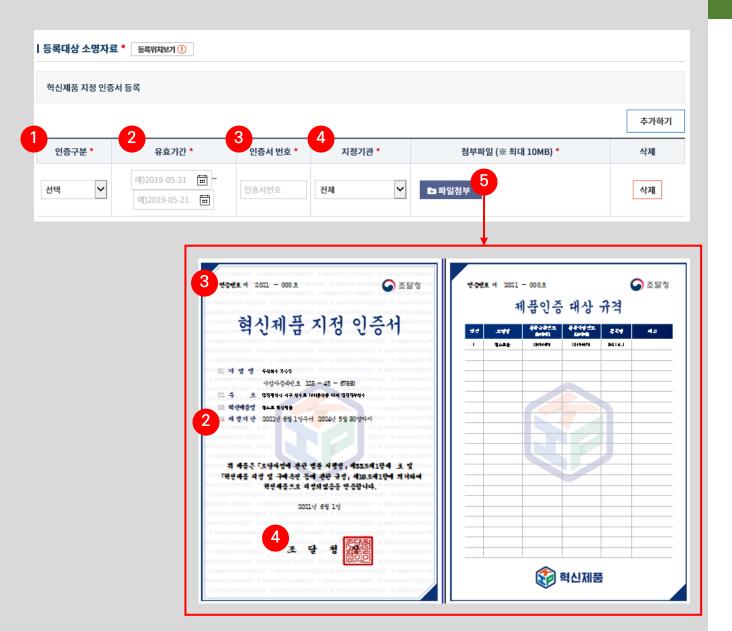
- 조회 버튼 눌러 식별명 또는 식별번호 검색
- 세부물품분류번호, 규격 등 자동 삽입

③ 모델명 입력

- 식별번호 신청 시 입력된 모델명과 동일하게 기재

④ 단위

- 식별번호 신청 시 기재된 단위를 입력하며 납품 조건에 따른 가격변동사항은 납품조건 항목에 기재



3.1 제품정보 입력

등록대상 소명자료 - 「혁신장터운영규정」제5조 등록 대상 제품의 인증내역을 입력

- ※ 식별번호 입력 후 인증정보 / 인증서 자동 삽입
- ① 인증구분
-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(패스트트랙 1)
- 혁신시제품 (패스트트랙 Ⅱ)
- 기타혁신제품 (패스트트랙 Ⅲ)
- ② 인증서 내 유효기간
- ③ 인증서 번호
- ④ 지정기관
- ⑤ 인증서



3.2 제품정보 입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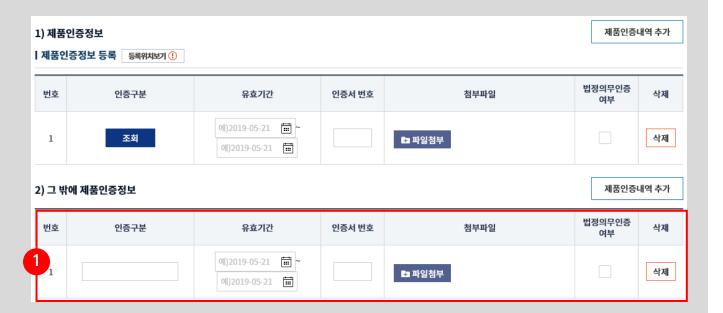
- ① 식별번호 조회 시 최종 규격서 자동 첨부
- ※ '혁신제품 지정현황'에 등록된 규격서가 자동 첨부
- * 규격 추가 및 변경은 혁신제품 지정부처에 관련 절차 문의
- ② 법정 인증 제품 납품확약서 서식 다운
- ③ 작성한 납품확약서 파일첨부
- ※ 법정 의무 인증자료 목록에 기재한 모든 법정의무인증 증빙자료를 반드시 아래 "제품인증정보등록"란에 제출 해야 합니다.
- ※ 법정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"해당없음"이라 기재



3.3 제품정보 입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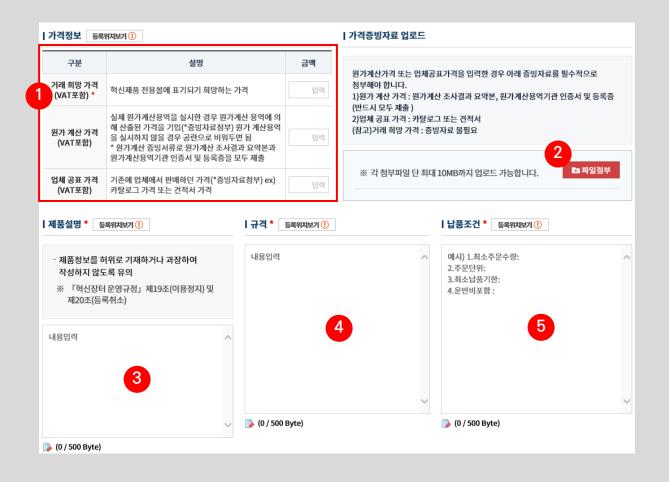
① 제품인증정보

- 법정인증제품납품확약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 작성
- ② 조회버튼 클릭 → 필요한 인증 선택
- ③ 유효기간 입력
- 유효기간 해당 법정의무인증의 유효기간 입력
- 유효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력 하지 않음 (9999-12-31로 자동 입력됨)
- ④ 파일첨부
- 해당 인증의 증빙서류 파일첨부
- ⑤ 법정 의무 인증 체크
- 법정의무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 체크
- 법정 의무 인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: 체크 안 함



3.3 제품정보 입력

- ① 1)제품인증정보에서 입력이 불가능한 법정 의무 인증이 있는 경우 작성
- 직접 해당 인증 (허가 등 포함) 구분 입력 후 첨부파일 업로드
- 법정의무인증인 경우 법정의무인증 여부 체크 필수
- ※ 인증서번호
- 인증서 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(선택 사항)
- * 유효기간 종료일이 없는 인증서 유효기간 입력 시 만료일을 2999-12-31로 입력하고 인증기간이 만료되면 상품검색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



3.4 제품정보 입력

- ① 가격정보 입력
- 거래희망가격(필수, 증빙자료 X): 거래희망단가 입력
- 원가계산 가격(선택, 증빙자료 o)
- 업체 공표가격(선택, 증빙자료 o)
- ② 가격 증빙 자료 첨부
- 원가계산 가격 : 원가계산결과 요약본, 원가계산용역 기관 인증서 및 등록증 모두 제출 필요
- 업체 공표가격: 카탈로그 또는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
- ③ 제품설명 등록
- ④ 규격 입력
- 제품의 특징 등의 규격사항 간단하게 입력. 해당되는 규격 내용이 통합검색 키워드로 활용됨
- ⑤ 납품조건
- 희망단가에 대한 납품조건 입력 (예 : 최소주문수량, 배송조건 등)



3.5 제품정보 입력

① 카테고리 선택

- 선택한 혁신몰 카테고리로 분류

② 제품 키워드 등록

- 추가 버튼 클릭 해 최대 10개 키워드 등록 가능 (통합검색 시 검색 키워드로 조회)

③ 제품 상세 작성

- 제품 설명은 물론 상세 이미지 등록 가능
- 상세 이미지 가로는 최대 1110px까지 가능
- 더 큰 크기로 작성 시 화면에 제대로 노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.
- ※ 수요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, 이미지 또는 텍스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※ 텍스트의 나열보다는 이미지를 사용한 상세정보 등록 시 상품에 대한 정보 확인이 용이합니다.



3.6 제품정보 입력

- ① 제품의 대표 이미지
- 파일첨부 버튼 클릭 최대 5장 등록 가능
- 가로*세로 : 600*600px
- ※ 등록한 이미지 중 첫번째 이미지가 대표이미지로 노출됨 (검색 및 리스트 내 상품 썸네일)
- ※ 다른 4개 이미지는 상품 상세화면 내에서 확인 가능
- ② 중소벤처기업부(중소기업유통센터)의 기술 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인 경우 작성
- ③ 작성한 내용 미리보기 가능
- ④ 제출



4.1 상품등록 신청 현황 조회

① 제품등록신청조회

- 혁신장터 로그인 〉 상품등록 배너 클릭 〉 제품 등록신청 조회 〉 등록 현황 목록 내 상태로 진행 상황 확인 가능

② 제품 등록 진행 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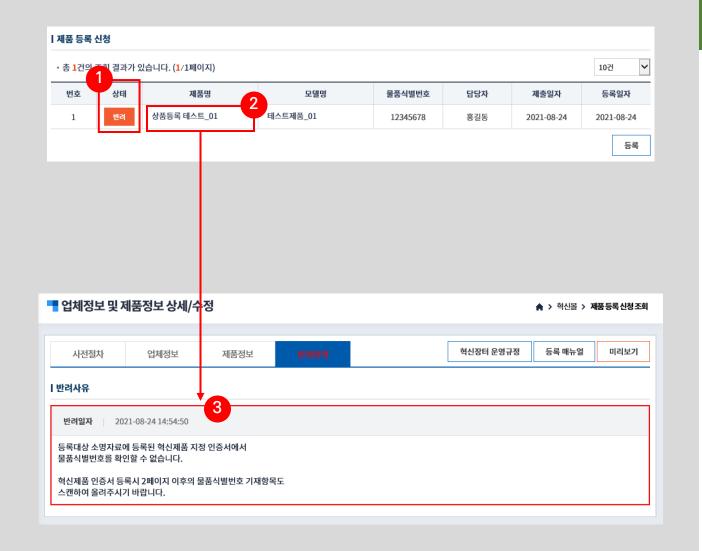
- 제출: 제출 완료된 상태 (제출 버튼까지 누른 상태)

- 반려: 반려이력을 확인하여 수정 후 다시 제출 요망

- 승인: 혁신제품 전용몰에 제품 등록 완료

③ 제품명 클릭

- 업체정보 및 제품정보 작성 페이지로 이동



4.2 반려 내용 확인 및 수정

- ① 진행상태 확인
- ② 제품명 클릭
- ③ 반려 사유 확인
- 제품정보 및 업체 정보 탭 클릭하여 이동
- 필요한 내용 수정 후 제출버튼 클릭
- ※ 상품정보 수정을 위해서는 상품등록 관리자에 수정요청 필요
- ※ 수정요청 시 해당 제품은 반려처리 되며 다시 제출하여 승인 되기 전까지 혁신장터 내 상품이 노출되지 않음

업체 · 상품정보 등록 & 수정 문의

070-4056-767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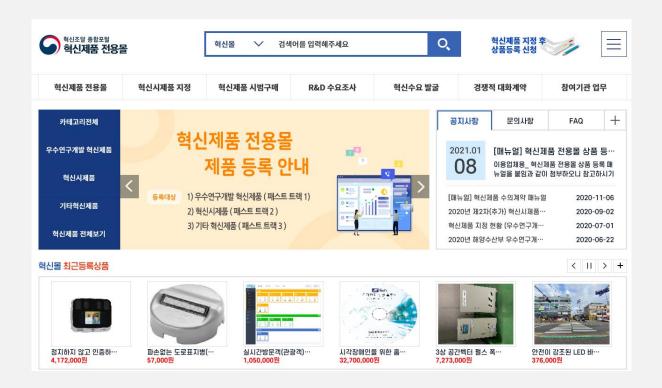
Q. 혁신장터에는 누구나 상품등록이 가능한가요?

혁신제품 전용몰에는 혁신제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. 혁신제품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.

(관련규정「조달청 혁신장터 운영·관리 규정」)

-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(Fast Track I)
- ② 혁신시제품(Fast Track II)
- ③ 혁신성·공공성 인정제품 (Fast Track Ⅲ)

※ 혁신제품으로 지정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최종 규격서에 명시된 지정 받은 물품식별번호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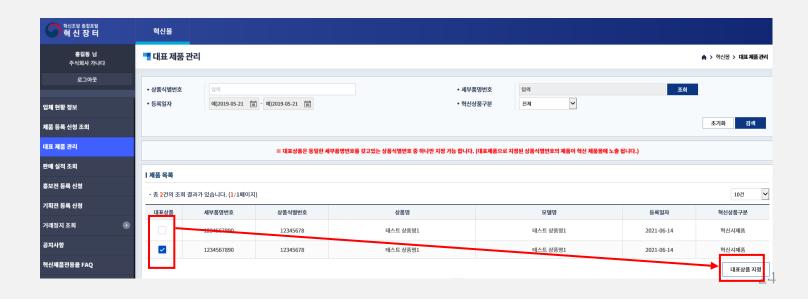


Q. 다수 제품을 지정 받았는데 등록은 어떻게 하죠?

- ① 각 규격 별(물품식별번호)로 제품을 등록 신청합니다.
- ② 대표 제품 1개를 우선 등록 신청합니다.
- ③ 해당 제품을 승인 받은 후 나머지 제품도 등록 신청합니다.
- ④ 제품 등록은 업체가 정보 작성 후 제출하면 관리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처리 진행.
- ※ 여러 제품을 한번에 등록 시 동일 사유로 모두 반려처리 될 수 있으므로 대표 제품을 우선 등록하여 검토, 승인 후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제품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※ 다수 제품(물품식별번호로 구분) 등록 신청 시 첫 번째 저장한 제품 정보가 이후 제품 등록 신청 시에도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.

Q. 메인화면 '최근등록제품' 배너에 제품이 1개만 노출 되요

- ①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 제품을 등록한 경우 업체별로 대표 제품 1개만 해당 부분에 노출되며, 가장 먼저 제출하여 승인처리 된 제품이 대표제품으로 기본 설정됩니다. (혁신제품전용몰 메인화면 최근 등록제품 배너)
- ② 마이페이지(혁신장터 로그인하여 혁신제품 지정 상품등록 신청 클릭)에 들어가 대표 제품 관리 메뉴를 통해 다른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③ 해당 부분은 대표 제품만 노출되나 혁신장터 검색 시 등록한 모든 제품 조회 가능합니다.



Q. 제품 등록 시 임시저장이 안되나요?

- ① 임시저장버튼이 없으므로 제품 등록 시 모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가 바랍니다.
- ② 제품 관련 상세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 수정 요청을 하셔야 제품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.

업체 · 상품정보 등록 & 수정

070-4056-7672

혁신장터 시스템 오류

042-365-0595, 0593

Q.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①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장터에 제품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.
- ② 제품 등록 후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, 검토 후 시범구매 수요조사 대상 제품에 포함됩니다.
 - ※ 참조 :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상시 접수 안내(`21.12.1.부터 상시접수)
- ③ 수요기관 대상으로 시범사용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, 조달청 내부 심의를 거쳐 시범사용기관 및 수량, 예산규모 등이 확정되게 됩니다.
 - ※ 공고문 예시(2022년 제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수요조사 안내)